

전주지방법원 2020. 1. 31 선고 2018나1341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전주지방법원 2020. 1. 31 선고 2018나13410 판결

전주지방법원 2018. 11. 15 선고 2018가소17842 판결

전문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 종결 2019. 10. 18

판결선 고 2020. 1. 31

제1심 판결 전주지방법원 2018. 11. 15. 선고 2018가소17842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 201, 57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 7.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3 . 3. 19. 서울가정법원 2013년2173 이혼 및 위자료 등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로또판매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로또사업자 명의를 갱신하여 주고 피고는 원고에게 비용조로 매달 30만 원을 지급한다.

만일 원고가 이를 어기고 피고의 동의 없이 로또사업자 명의를 일방적으로 없애면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으로 금 3, 000만 원을 지급한다.

원고 명의로 운영하는 로또판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세금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조정조서에 따른 30만 원을 매달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1호증,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의 명의로 로또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얻은 소득으로 인하여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건강보험료가 인상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건강보험료 인상분에 해당하는 2,201,57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에 관하여 사회보험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사회보험료는 피보험자 또는 그 사용자가 보험자의 보험급여를 위한 재정을 충당할 목적으로 납부하는 것이다.

사회보험료의 일종인 건강보험료는 기존의 공과금체계에 편입시킬 수 없는 독자적 성격을 가진다. 즉 특정의 반대급부 없이 금전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세금과는 달리, 건강보험료는 반대급부인 보험급여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특정 이익의 수혜나 특정시설의 사용가능성에 대한 금전적 급부인 수익자부담금과는 달리, 급여혜택을 받지 못하는 제3자인 사용자에게도 보험료 납부의무가 부과된다는 점에서 수익자부담금 과도 그 성격을 달리한다(헌법재판소 2012. 11. 29. 선고 2011헌마814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명의로 영위하는 로또판매업에 관하여 발생하는 세금은 피고가 부담하고, 그 외 비용의 부담과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30만 원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보이고, 위 법리에 의하면 건강보험료를 세금으로 볼 수 없어 원고가 부담하게 된 건강보험료 인상분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30만 원의 비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오재성판사 김자림판사 김주완